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2. 13 선고 2021가단875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1. 4. 8. 접수 제8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6. 10. 11. 11,000,000원을, 2017. 2. 16. 8,100,000원을, 2018. 2. 21. 6,6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D이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E은 2019. 5. 29.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F는 2021. 9. 2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D의 부동산 처분행위

D은 2021. 4. 8.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1. 4. 8. 접수 제87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은 원고 외에도 G은행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북전주세무서에 세금 1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D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D은 전주지방법원 2022개회10032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2. 6. 1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23. 1. 9.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위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표에는 원고가 양수한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순천시 H 행정복지센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E로부터 최종 양수한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D이 E과 F 사이의 채권양도 사실 및 F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572 판결 등 참조), 위 각 채권양도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원고의 소장이 2021. 1. 26. 피고에게 송달된 점, D은 피고의 부친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던 점, D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전주지방법원 2022개회100322호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원고가 양수한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요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양도 통지는 D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D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만 증여로 하였던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재산상태 및 D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별지